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6-26

수 원 지 방 법 원

제 2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7구합70824 재산세감면 거부처분 취소의 소
원 고	[redacted] 주식회사
피 고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변 론 종 결	2018. 4. 25.
판 결 선 고	2018. 5. 16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7. 8. 29. 원고에 대하여 한[redacted]시 [redacted]동 1232번지 외 1필지 지상 [redacted] [redacted] 50세대에 관한 재산세 감면 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6-26

가. [redacted] 주식회사(이하 '[redacted]'라고 한다)는 [redacted]시 [redacted]구 [redacted]동 1232 외 1필지의 토지를 [redacted] 주식회사(이하 '[redacted]'이라고 한다)에 신탁하였고, [redacted]은 위 토지에 73개동 규모의 단독주택단지인 '[redacted]'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후, 2015. 5. 21. 신축된 '[redacted]' 단독주택 73개동에 관하여 [redacted]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.

나. 그 후 [redacted]는 '[redacted]' 단독주택 73개동 중 분양되지 않은 50개동(이하 '이 사건 각 단독주택'이라고 한다)을 다시 원고에게 신탁하였고, 이에 따라 원고는 2015. 6. 5. 이 사건 각 단독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피고는 2016. 7. 11. 및 2016. 9. 9.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단독주택에 관한 2016년도 재산세,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합계 62,814,900원(이하 '이 사건 재산세 등'이라고 한다)을 부과·고지하였고, 원고는 2016. 8. 1. 및 2016. 9. 30.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.

라. 한편 이 사건 각 단독주택은 1개동이 1세대를 구성하고, 각 동의 층수는 2층이며, 연면적은 각 227㎡로서, 이 사건 각 단독주택 등의 신축공사가 착공될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 시행령(2014. 11. 28.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2조 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, 내진보강설계가 적용·시공되었고, 이에 따라 [redacted]시장은 2016. 6. 21. '루시드에비뉴' 단독주택단지에 관하여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른 '내진보강 지원 확인서'를 발급하였다.

마. 원고는 2017. 3. 9. 피고에게 '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6. 12. 27. 법률 제14477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6-26

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47조의4'를 근거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10%에 해당하는 6,281,490원에 대한 경감을 신청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(이하 '이 사건 경감신청'이라고 한다). 피고는 이 사건 경감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단독주택을 [redacted]로부터 신탁 받았음을 전제로, 2017. 8. 29. 원고에게 '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「양도」에 해당하므로, 이 사건 각 단독주택은 재산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'는 취지로 회신하였다(이하 '이 사건 회신'이라고 한다)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(가지번호 포함)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관련 법령

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.

3. 원고 주장의 요지

이 사건 각 단독주택은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성능확인을 받았으므로,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산세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.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에 대한 이 사건 경감신청을 하였는데, 피고는 원고가 대림디앤아이로부터 이 사건 각 단독주택을 신탁 받은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 단서의 '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'에 해당한다는 부당한 이유로 이 사건 경감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회신을 하였으므로, 이 사건 회신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.

4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

가. 피고 주장의 요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6-26

피고는, 원고의 이 사건 재산세 등에 대한 이 사건 경감신청은 단지 민원 제기에 불과하므로,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, 이 사건 경감신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신청기간인 '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'에 제기되지도 않았으므로,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.

나. 이 사건 경감신청에 대한 거부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,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,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,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(대법원 2003. 9. 23. 선고 2001두10936 판결 참조). 그런데 지방세의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할 수 있고(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항 단서),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(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)은 감면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신청이 감면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으며, 나아가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에게는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으므로(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),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한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(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1두10639 판결 등 참조).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경감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로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,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6-26

다. 이 사건 경감신청을 이 사건 재산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로 보는 경우

이 사건 경감신청을 구 지방세기본법(2016. 12. 27.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51조에 규정된 경정청구로 보는 경우,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.

1) 통상적 경정청구를 규정한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호, 제2호는, "「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」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(제1호),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(제2호)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[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(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(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)를 말한다]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"고 규정하고 있다.

또한, 후발적 경정청구를 규정한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은 "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 ·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(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)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(제1호),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·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(제2호), 위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(제3호)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6-26

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."고 규정하고,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(2017. 3. 27.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0조는 후발적 경정사유로 "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(제1호), 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(제2호), 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(제3호),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(제4호)"를 규정하고 있다.

2)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경감신청은 원고에게 그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거나, 원고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한 것이어서, 부적법하므로,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경감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로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,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.

가)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,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(대법원 1999. 7. 23. 선고 98두9608 판결, 대법원 2017. 8. 23.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).

나) 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은 "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·징수한다."고 규정하고,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6-26

제19호는 "「보통징수」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."고 규정하고 있다. 따라서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세액을 산출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부과납부 방식에 따라 과세될 뿐 달리 과세표준신고서(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7호, 지방세의 과세표준 · 세율 · 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)를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. 따라서 원고에게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통상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 또한,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,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.

다) 한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, 원고가 2016. 6. 21. 이 사건 각 단독주택에 관하여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, 이는 2016. 7. 11. 및 2016. 9. 9. 각 이루어진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 · 고지 이전에 있은 사유로,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후발적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재산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 또한, 앞서 본 것과 같이,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, 이 사건 경감신청은 원고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인 2016. 6. 21.로부터 2개월이 훨씬 지난 2017. 3. 9. 비로소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.

5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6-26

결한다.

재판장 판사 홍승철

판사 인진섭

판사 권순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6-26

별지

관련 법령

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(2016. 12. 27.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47조의4(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)

① 「건축법」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(「건축법」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주택으로서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 다만, 그 건축물 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건축법」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고,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.

제183조(감면신청 등)

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,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.

제184조(감면자료의 제출)

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제126조(감면 신청)

① 법 제18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5.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: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

■ 구 지방세기본법(2016. 12. 27.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2조(정의)
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6-26

7. "과세표준신고서"란 지방세의 과세표준·세율·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.
8. "과세표준수정신고서"란 처음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.
9. "법정신고기한"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.
16. "신고납부"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.
17. "부과"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.
18. "징수"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.
19. "보통징수"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.

제7조(지방세의 세목)

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8. 재산세

제51조(경정 등의 청구)

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[「지방세법」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(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(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)를 말한다]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(「지방세법」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)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1.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(「지방세법」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)이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
2.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(「지방세법」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)이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

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.

1. 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6-26

한 소송에 대한 판결(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)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

2.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
3.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8장에 따른 이의신청, 심사청구, 심판청구 또는 「감사원법」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.

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■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(2017. 3. 27.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30조(후발적 사유)

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(경정)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
2. 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
3. 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■ 지방세법

제116조(징수방법 등)

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·징수한다.

끝.